

‘카스’의 추억과 인격권



한동안 열심히 했던 ‘카스(카카오스토리의 줄임말)’를 오랜만에 열어봤다. 게시물의 상당수가 아이들 사진이다. 살 빠지기 전 통통했던 큰 아이 모습, 채 아기 티를 벗지 못한 둘째와 셋째. 게다가, 아이들 사진마다 자식 키우는 다른 부모들의 열렬한 댓글이 이어진다. 사진에 달린 댓글까지 읽노라니 입가에 절로 웃음이 번진다. 이런 게 자식 키우는 부모의 소소한 행복이고 보람 아니겠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하는 엄마들의 97%가 자신의 계정에 자녀의 사진을 올렸다고 한다. 우리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의 사진을 자랑삼아 카톡 때문에 걸고 SNS에 올리며 오늘도 우리 부모들은 자식 자랑하느라 바쁘다.

이런 글로벌한 부모들의 행태에 관해 최근 들어 이런저런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려의 핵심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지난 3월 6일 자 뉴시스 <프랑스 부모, 자녀 사진 동의 없이 SNS 게재 시 징역형 가능> 제하의 기사는 우리 시대 부모들을 향한 거의 최고 수위의 경고가 아닐까 싶다.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자녀의 동의 없이 SNS에 사진을

올린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으며 자녀들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 사진 한 장 올렸다고 벌금이 라니 이게 대체 말이 되나.

프랑스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어떨까? 인격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법제 역시 SNS 사진 공유에 썩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 초상권 내지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의 본질은 자신의 인격적 사항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다. 본인의 동의가 빠진 초상이나 사생활의 촬영 및 공개라면 설령 그 주체가 부모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할 수 있다.

물론, 미성년 자녀들에게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 관리는 물론이고 법률행위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자녀의 인격적 사항에 대한 동의 역시 부모가 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제3자일 때 이야기다. 부모 자신이 당사자가 되면 일종의 이해상반관계가 되어 부모의 법정대리권 역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민법 제921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도 문제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1

조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것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언에 집착한 다소 지나친 적용이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개인정보보호법 내에 부모를 배려한 예외규정이나 특별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애들아, 아빠가 너희 사진 찍어서 아빠 친구들 볼 수 있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내 눈에 아직 너무 작고 어린아이들이지만 자신의 사진 공유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한다. 사춘기를 맞은 큰 아이는 분명한 거부의 의사를, 막내는 동의를, 둘째는 묵묵부답이다. 사실 아이의 의견을 묻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냥 귀찮을 뿐이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한 것이다. 부모로서 이 정도도 못하나 하는 생각,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이의 사진 한 장 올리는 것인데 말이다.

부모가 아이의 의견을 묻는 것은 그가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부모에게서 아이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까지도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다.